#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2 발의연월일: 2020. 8. 25.

발 의 자: 박재호·전재수·최인호

김정호 • 한병도 • 박용진

정춘숙・김수흥・김두관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되고 있는 반면,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현행법의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신설, 제60조의3, 제82조의4제1항 삭제, 제109조

제2항, 제218조의14제1항 등).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 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를 각각 "주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를 "줄 수 있다"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을 "제59 조제4호"로 한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2호·제3호"를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u>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u>
	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
	<u>는 경우</u>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운동) 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2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	
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 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 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 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 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 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 <u>하는 행위</u>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3. ~ 5. (생략)
-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 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 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③ ~ ⑥ (생 략)

<u>주는 행위</u>
<u>주는 행위</u>

3. ~ 5. (현행과 같음) <삭 제>

2	
	<u>줄 수 있다</u> .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선거운동) <삭 제>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 擧運動의 금지) ① (생 략)
  - ②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選擧運動은 夜間(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 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③ (생략)
-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 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 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 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1. <u>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u> 선거운동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	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월	里
-	擧運動의 금지) ① (현행과 집	<u>}</u>
	<u>이</u>	
(	② <u>제59조제4호</u>	_
-		_
		_
-		_
-		
(	③ (현행과 같음)	
제;	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	1
•	에 관한 특례) ①	_
-		-
-		-
-		_
-		_
-		_
-		
	제50조제9중보터 제4중까지	ı

의 규정-----

- 2. ~ 5. (생 략)
-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 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 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 동
- ② ~ ⑦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 ② ~ ⑦ (현행과 같음)